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10. 21 선고 2022가단20503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, 담당변호사 조경윤, 김윤석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룡

변 론 종 결 2022. 9. 23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1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20. 11. 24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. 12. 9. 접수 제194581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C(이하 'C'라 한다)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보증일	보증금액(원)	보증기한	대출은행	대출일자	대출금액(원)	연대보증인
2016. 1. 13.	199,500,000	2017. 1. 13.	D은행	2016. 1. 14.	210,000,000	B

나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하면서,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, C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(2020. 6. 1. 이후 연 8%)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5/1000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(대지급금)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고, 원고는 C가 압류 · 가압류 · 가처분을 당하거나, 회생절차 · 파산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,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당하거나,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,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,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C에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.

다. B은 C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

연대보증하였다.

라.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210,000,000원을 대출받았고, 이후 C의 D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대출기한이 연장됨에 따라,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 변동 없이 보증기한만 2017. 1. 13.에서 2018. 1. 12.까지로, 다시 2019. 1. 11.로, 2020. 1. 10.로 각 변경되었다가, 2020. 1. 2. 보증금액이 199,500,000원에서 189,000,000원으로, 보증기한이 2020. 1. 10.에서 2021. 1. 8.로, 보증비율이 95%에서 90%로 변경되었고, 2020. 12. 22. 다시 보증금액이 151,200,000원으로, 보증기한이 2022. 1. 7.로 최종 변경되었다.

마. C는 2021. 9. 24. 폐업으로 보증사고를 야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대출원리금 153,070,406원(=원금 151,200,000원+이자 1,870,406원)을 대위변제하였고, 2022. 1. 5. C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9,940원을 회수하여 잔존대위변제금은 153,060,466원(=153,070,406원-9,940원)이 되었다. 또한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967,273원이다.

바. 한편, C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B은 2020. 11. 24.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원의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해 12. 9.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1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 주장 요지

가. 원고

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을, B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채권(이하 각 채권을 ‘구상금채권’이라 한다)을 가지고 있다. 위와 같은 C와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, 가까운

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그 개연성이 실현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 그런데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누나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, 이는 원고 등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나. 피고

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하여야 한다. 그러나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년 이상이 지나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.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0. 12. 22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51,200,000원, 보증기한을 2022. 1. 7.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,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고, 나아가 위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,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21. 9. 24.경 폐업하였고, 그 이전에 대출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

1) 관련 법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

참조).

2) 구체적 판단

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,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, 갑 15 내지 17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C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, 2022. 1. 7.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1년씩 보증기한만 연장되거나 일부 보증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약정이 체결된 점, ② 2019년 상반기(2019. 1. 1.~2019. 6. 30.) 194,668,141원에 이르던 C의 매출액이 같은 해 하반기(2019. 7. 1.~2019. 12. 31.)에는 531,817원으로 급감하였고, 2019년 당기순손실액이 618,465,000원에 이른 점, ③ C의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이 218,181원에 불과하였고,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20년 하반기 매출액은 0원에 불과하여 C는 그 무렵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보이며, C의 2020년 당기순손실액도 184,621,000원에 이르렀던 점, ④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. 9. 24. 폐업하였으나, 피고가 제출한 AS현황 자료에 의하더라도 2021. 4.경 이미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⑤ 원고가 2020. 12. 22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에 관한 변경약정 당시 C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2019년도 C의 표준대차대조표 등(갑 17호증의 9, 10)을 제출받고도 별다른 추가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, 원고는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확대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완화 및 부품·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시행되던 내규(갑 16호증 참조)에 따라 2021. 3. 31. 이내에 보증기한의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해 주고 있었고, 원고가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D은행이 C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아 C는 그 상환기한 도래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, 이때 C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면 결국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여야 하므로, 원고가 위와 같은 보증기한을 연장해 준 것은 위와 같은 대위변제 시기를 지연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, 따라서 원고가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연장 당시 장래에 보증사고 발생으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(대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2다201953 판결

참조)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C와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실제로 원고는 가까운 장래인 2021. 9. 24. C와 B에 대한 사전구성권을 취득하였으며, 그후 원고가 C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,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

1) 관련 법리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,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(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다241819 판결,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).

2) 구체적 판단

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누나인 피고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인 B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

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원고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황순교

[별지]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E 대 283㎡

중 3분의 1 지분

2. 서울특별시 마포구 E
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마포구 F

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(9가구)

1층 157.89㎡

2층 144.31㎡

3층 125.73㎡

지층 161.85㎡

옥탑 20.68㎡(연면적제외)

중 3분의 1 지분 끝.

